

# 17세기 후반 慶尙道 義城縣의 禹氏 烈女의 삶과 생활\*

- 申德涵의 『禹烈女傳』을 중심으로-

朴 珠\*\*

- I. 머리말
- II. 작자 申德涵 소개 및 저술 동기
- III. 『禹烈女傳』의 내용
  - 1. 결혼과 남편의 죽음
  - 2. 수절과 개가 권유
  - 3. 자결의 시도와 소생
- IV. 작자의 우씨 열녀에 대한 평가
- V. 맺음말

## 요약

본고는 17세기 후반 경상도 義城縣에 살았던 禹召史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열녀에 대한 기존의 관찬기록의 단편적 내용을 토대로 한 포괄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자료로서 발굴된 『禹烈女傳』자료를 중심으로 우열녀 사례의 집중분석을 지향하였다.

『禹烈女傳』은 숙종 20년(1694)에 申德涵(1656~1730)에 의해 쓰여졌

---

\* 본 연구는 2006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투고일 2006.8.21.

심사일 2006.8.22.

심사완료일 2006.9.6.

다. 『禹烈女傳』에는 우열녀의 출생과 성장배경, 결혼 초의 시집생활, 도적의 침입으로 인하여 줄지에 과부가 된 과정, 군인 이영발의 청혼과 협박, 이웃부인의 개가 권유와 우열녀의 강한 수절 의지, 이영발의 집 마당에서의 자결 시도와 소생 등이 매우 생생하게 서술되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작자 申德涵은 우열녀가 궁벽한 시골마을에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건문도 없이 절개, 효, 지혜, 용기를 겸비한 행실은 옛 열녀보다 뛰어났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리하여 우열녀의 행적이 문혀 사라지지 않도록 우열녀의 모든 행실을 자세히 기록하였던 것이다.

우열녀의 삶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열녀의 이름은 末叱眞(進)으로 효종 8년(1657) 慶尙道 義城縣 東村 店池洞 이라는 궁벽한 시골 마을에서 목수의 딸로 태어났다. 나이 21세 때인 숙종 3년(1677)에 안동인 金德立과 결혼하였다. 시부모님으로부터 우리 賢婦라는 칭찬을 받으며 딸 하나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숙종 9년(1683) 어느 날 도적이 갑자기 들어와 남편이 도적의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우열녀는 맨몸으로 칼을 무릅쓰고 남편을 구하고자 했으나 같이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 남편은 죽고 혼자 살아남게 되자 굶어서 따라 죽고자 했다. 그러나 가족들의 만류로 죽지를 못하고 守節하게 되었다. 그 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어머니와 뒷날을 기약하며 이별하고, 어린 딸을 데리고 친가로 돌아와 품팔이 생활을 하며 늙고 병환중인 부친 莫卜을 봉양하였다. 그러던 중 홀아비 군인 李永發이 오랫동안 짝사랑을 하여 청혼하였다. 이웃부인이 달래어 개가를 권유했으나 우열녀는 죽어도 개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영발은 열녀의 승낙을 받지 못하자 가족과 친족 그리고 이웃에게까지 협박하였다. 이에 부친 莫卜과 이웃사람들은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우열녀는 청혼을 승낙하고 영발의 집으로 갔다. 영발의 집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추상같은 꾸밈음과 이어서 영발이 차고 있

17세기 후반 慶尙道 義城縣의 禹氏 烈女の 삶과 생활

던 칼로 자결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소생하였다. 우열녀는 비록 자결함에 실패하였지만 죽음으로써 강하게 저항함으로써 그 烈行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먼저 작자 申德涵에 대한 소개와 저술동기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禹烈女傳』 자료를 통하여 우씨 여성의 열녀로서의 삶과 생활을 생생하게 조명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17세기 후반, 경상도 의성현, 禹烈女, 申德涵, 『禹烈女傳』

## I. 머리말

『禹烈女傳』<sup>1)</sup>은 숙종 20년(1694)에 申德涵(효종 7년, 1656~영조 6년, 1730)에 의해 쓰여졌다. 우열녀의 이름은 末叱眞이고 慶尙道 義城縣 東村 店池洞 출생으로 金德立의 처이다.

禹烈女에 대한 기록은 『慶尙道邑誌』<sup>2)</sup>義城縣<sup>3)</sup> 열녀조<sup>4)</sup> 에도 보이는 하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용이 소략한 편이다.

禹召史의 이름은 末叱進으로 金德立의 처이다. 덕림이 적에게 죽임을 당하자 自裁코자 했으나 家人에 의해 죽지를 못했다. 服이 끝났음에도 衰服을 벗지 않았으며 朔望 때 마다 문득 號哭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였다.

강폭한 자가 있어 뜻을 뺏고자 함을 女가 듣고 기뻐하며 말하기를, “남편이 죽고 원수를 찾지 못했는데, 지금 나를 범하고자하는 자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며 官에 고하였다. 이로부터 감히 奸하고자하는 자가 없었다. 긴 칼 하나를 갈아서 항상 목걸에 두었다. 늙고 병든 아버지를 걱정하여 眞정으로 돌아와 봉양하였다.

그러나 시부모와 남편의 生辰과 忌日 그리고 俗節에는 몸소 祭需를 갖

- 
- 1) 『禹烈女傳』은 대구의 한 고서점에서 발견된 자료이다. 가로 18.5 c m, 세로 26.5 c m로서 30쪽이나 되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한문 필사본이다.
  - 2) 『慶尙道邑誌』는 총 20책으로 순조 32년(1832)에 작성되었다. 여기에서는 아세아문화사에서 간행한 한국지리총서 『慶尙道邑誌』 1책을 참조하였다.
  - 3) 『慶尙道邑誌』義城縣의 建置沿革을 보면 의성현은 본래 召文國이었다. 신라 경덕왕이 聞韶郡으로 고쳤다. 고려초에 義城으로 고치고 府로 승격하였다. 현종이 안동부에 소속시키고 仁宗이 縣을 두고 神宗이 적에게 함락당한 것으로 監務로 내렸다. 충렬왕이 대구에 병합했다가 다시 縣을 두고 조선에 이르렀다.
  - 4) 『慶尙道邑誌』의성현 열녀조에는 禹召史라고 나와있다. 召史라는 칭호는 양반의 처가 아닌 양인의 처, 또는 천민에게 붙이는 칭호이다.

추어서 백리를 멀다하지 않고 가서 제사를 드렸다. 李永發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본래 강폭하여 겁탈하고자 하니, 女가 칼을 꺼내 스스로를 찔렀으나 죽지 못하고 다시 소생하였다. 영발은 그 義를 두려워하여 드디어 그만 두었다.<sup>5)</sup>

그러나 신덕함이 작성한 『禹烈女傳』에는 우열녀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 소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즉 우열녀의 출생과 성장배경, 결혼 초의 시집생활, 도적의 침입으로 인하여 남편이 죽고 졸지에 과부가 된 과정, 군인 이영발의 청혼과 협박, 결혼독촉과 거짓말, 이웃부인의 개가 권유와 이에 대한 열녀의 강한 저항과 수절 의지, 이영발의 집 마당에서 자결시도와 소생 등이 매우 생생하게 서술되어있다. 『禹烈女傳』은 궁벽한 시골마을에 천한 신분인 禹召史의 이러한 행실에 신덕함이 감동하여 후세에 교훈을 남겨주려는 의도에서 저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본 자료는 우열녀의 사례를 통해서 17세기 후반 경상도 의성현에 살았던 한 양인 열녀의 삶과 생각의 일면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된다. 비록 천한 신분이지만 一夫從事의 변함없는 烈관념을 우열녀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禹烈女傳』을 통해 우리는 조선 후기 가부장제가 정착하면서 특히 서민층 여성의 守節의지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서민여성으로서 남들한테 烈을 지키고자 하는 자기 의지를 분명히 내세우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禹烈女傳』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名末叱進 金德立妻 德立死於賊 欲自裁爲家人所持得不死 服闋不脫衰 每朔望 輒號哭如初 有强暴者欲奪志 女聞之若喜曰 夫死 讐未得今之欲奸我者 是耶 卽訴于官 自是人無敢奸者 嘗礪一長刀 須臾不離身 閱其父老病 歸養 值舅姑及其夫生忌俗節 備祭需 躬奠不遠百里也 有李英發者 素强悍欲劫之 女袖刀自刺絶而復甦 英發畏其義 遂止之(『慶尙道邑誌』 義城縣 烈女條).

후대의 禹召史에 대한 기록류로는 剛窩 任必大(숙종 35년, 1709~영조 49년, 1773)의 시문집인 『剛窩集』<sup>6)</sup>과 川沙 金宗德(경종 4년, 1724~정조 21년, 1797)의 문집인 『川沙集』<sup>7)</sup>에 약간 보이고 있다.

열녀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적지않게 이루어졌으나<sup>8)</sup> 한 열녀를 깊이 있게 조명한 사례연구는 극히 드물다.<sup>9)</sup>이에 본고에서는 『禹烈女傳』을 통하여 17세기 후반 경상도 의성현에 살았던 우씨 여성의 열녀로서의 삶과 생활을 생생하게 조명하고자 한다.

- 
- 6) “禹烈女金德立妻禹召史 服夫之喪六週星霜非敢踰禮哀情未忘於赫 旌典永世流芳茲用曠感式 陳酌觴”(『剛窩集』 卷6 祭文, 祭境內孝子義士烈女文(代地主作)).
- 7) “金德立妻禹召史之自刎不屈 此貞節之卓異也.....三月三日 上洛金宗德序”(『川沙集』 卷17序 聞韶孝義烈事蹟序(丁亥)).
- 8) 朴 珠, 1990 『朝鮮時代의 旌表政策』, 일조각.  
\_\_\_\_, 2000 『朝鮮時代의 孝와 女性』, 국학자료원.  
이혜순 외, 2002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월인.  
이혜순, 김정미, 2002 『한국의 열녀전』, 월인 등.
- 9) 정창권, 2004 『향량, 산유화로 지다』, 풀빛, 들 수 있다. 이 책에 나오는 열녀 香娘을 소개하면, 숙종 28년(1702) 경상도 선산부 상형곡에서 향량이라는 여인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녀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고 계모의 슬하에서 자라났다. 17세에 같은 마을의 임철봉에게 출가했는데, 그는 나이 14세로 그녀를 마치 원수처럼 미워하였다. 향량은 몇 년을 같이 살다가 부득이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오지만 친정부모가 용납하지 않아 숙부에게 의탁했고, 숙부도 얼마후 재가하도록 종용하였다. 그녀는 하는 수 없이 다시 시댁을 찾아갔으나 남편의 횡포는 여전하고 이번엔 시아버지마저 개가하기를 권유하였다. 결국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된 그녀는 낙동강의 지류인 오태강으로 가서 나무하는 한 소녀를 만나 자신의 기구한 인생사를 말하고 <山有花>란 노래를 지어 부른 뒤 강물 에 몸을 던져 자결하였다. 이에 향량이 시골의 무식한 여자로 지아비와 이혼을 했어도 不更二夫의 義를 알아서 죽음으로써 스스로를 지켰다 하여 숙종 30년(1704) 6월 좌의정 李畬의 건의로 旌閭가 내려졌다.

## II. 작자 申德涵 소개 및 저술 동기

『鵝洲申氏世系』<sup>10)</sup>에 의하면, 작자 申德涵은 효종 7년(1656) 5월 20일에 父 申休錫과 母 豊山洪氏 사이의 장남으로 경상도 의성현에서 태어나 영조 6년(1730) 4월 초9일에 75세의 나이로卒하였다. 그의 본관은 경상도 鵝洲(鵝洲는 곧 경상도 巨濟縣이다)이고 字는 仲游이며, 自號는 壘瘠이다.

그의 가계를 도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鵝洲申氏의 시조는 고려 權知戶長 英美이다.

5世 申祐<sup>11)</sup>는 고려시대 효자로 全羅道 按廉使를 지냈다. 고려조에 혼탁한 세상에 처해서는 청렴하고 결백함으로써 스스로를 지켰다. 부친상을 당하여 廬墓 3년을 하며 朝夕으로 號哭하니, 무덤 앞에 대나무 두 그루가 생겼다. 사람들은 이를 지극한 효성에 감동한 결과라 여겼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旌閭가 세워졌으며 마을 이름을 孝子里라 하였다.<sup>12)</sup>

11世 申元祿(중종 11년, 1516~선조 9년, 1576)의 字는 季綏이고 호는 悔堂, 陶巖이며 戶曹參議(정3품)를 증직하였다. 孝友가 出天하였으며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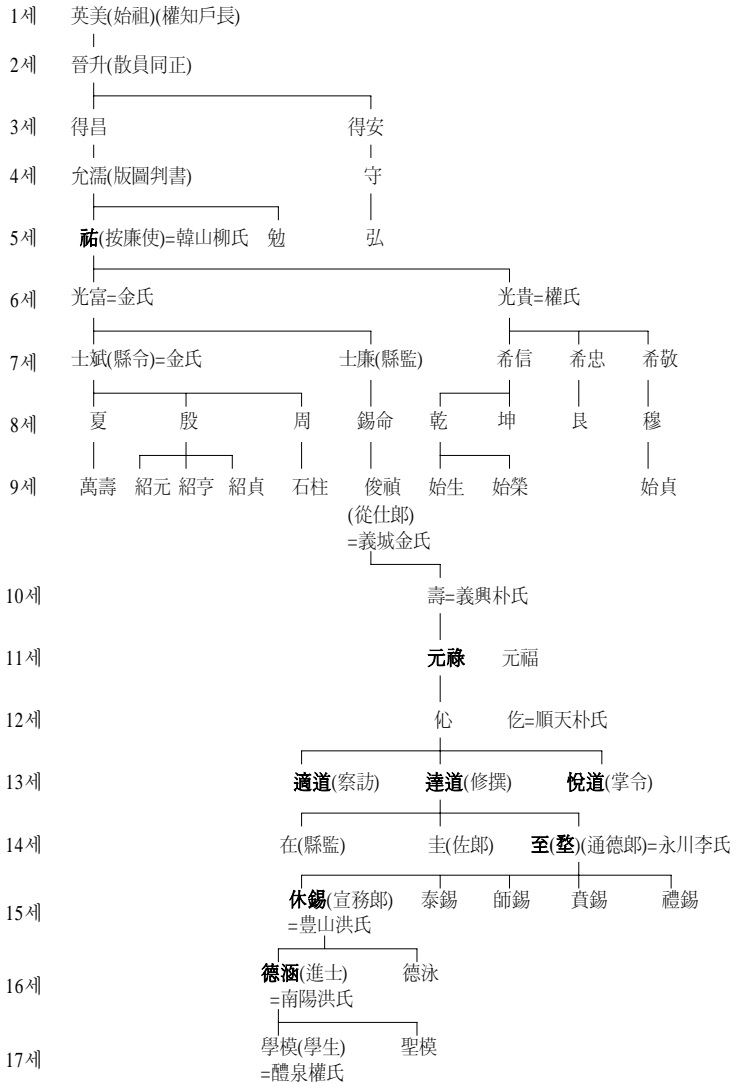
---

10) 『不忘記』(가로 13.5 c m, 세로 24 c m의 필사본으로 연대미상임)를 참조하였다. 저자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내용상으로 볼 때 申世欽과 申碩柱로 추측할 수 있겠다. 鵝洲申氏世系, 豊山洪氏世系, 安東金氏世系, 義城金氏世系, 完山李氏璿源, 完山李氏世系, 南陽洪氏世系, 廣州李氏世系, 本朝年代紀, 皇明年代紀, 醴泉權氏世系, 仁同張氏世系, 生家分系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鵝洲申氏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1)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8권 상주목 고려 효자조에 申祐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신우는 벼슬이 護軍에 이르렀으며 부친의 성함이 元濡라고 약간 다르게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12) 『悔堂集』 권3 附錄 孝友錄 참조.

【丑】 鵝洲申氏世系





문이 순수하고 지극하였다. 또한 예절이 바르고 청렴하였다. 李滉과 周世鵬을 스승으로 섬겼으며 曹南冥, 趙月川과 더불어 학문을 닦았다. 효행이 알려져 旌閭되었으며,<sup>13)</sup> 효자비가 의성현에 세워져 있다. 문집으로 『悔堂集』<sup>14)</sup>이 남아있다.

13世 신덕함의 증조부 達道((선조 9년, 1576~인조 9년, 1631)의 자는 亨甫이고 호는 晩悟이다. 조목과 유성룡 및 장현광 등에게 수학하였다. 인조 1년(1623)에 庭試文科에 장원 급제하여 成均館 典籍을 거쳐 成歡察訪이 되고, 1624년 이괄의 난에 大駕를 모시고 公州로 피난하였으며 그

13) 『悔堂集』 권3, 附錄 「孝友錄」, 「墓表」, 「續三綱行實」, 「聞韶誌」(『退溪學資料叢書』 11, 1998,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편, 법인문화사)를 보면 신원록의 효행이 다음과 같이 자세히 나와있다. 11세에 부친이 風疾에 걸려 치료가 어렵게 되자 팔공산에 올라가 손수 약초를 캐서 良醫의 조제를 받아 밤낮으로 끓여 올렸다. 부친이 그가 올린 약을 드시고 병세가 조금 호전되었다. 무릇 8년 동안이나 밤을 지새워 가며 부친을 정성껏 간호 했으나 1533년 봄 문득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장사를 치르고 廬墓 3년하였다. 신원록은 모친이 93세로 돌아가시자 만들어 두었던 모친의 영정을 几筵에 걸어놓고 朝夕으로 곡하였고, 눈, 비를 피하지 않고 하루에 세 번 성묘하였으며, 미음만 마시고 다른 것은 입에 가까이 하지 않아 몸이 날로 파리해져 한달 여를 앓다가 결국 廬墓에서 세상을 떠났다. 선조 23년(1590) 향인들이 신원록의 행적을 적어 고을 수령에게 올려 조정에 알려지게 하였다. 얼마 후 마침 임란이 일어났기에 조정에서 그를 표창하는 일을 거행 할 수 없었다. 선조 36년(1603) 향인들이 다시 글을 적어 方伯에게 올렸고, 방백이 즉시 조정에 啓聞하여 復戶의 특명이 내려졌고, 광해군 7년(1615) 旌閭가 내려졌다. 효종 7년 (1656) 의성 원흥동에 旌閭閣이 세워졌고 碑를 세워 표하였다. 숙종 11년(1685)에 이르러 도내 士林들에 의해 藏待院祠에 제향하게 되었던 것이다.

14) 『悔堂集』은 신원록의 시문집(목판본, 4권 2책)으로 권두에 李光庭의 <序文>과 6세손 正模가 찬한 <年譜> 및 <年譜跋文>이 있고, 권1에는 賦 4편과 詩 49수가 있다. 권2에는 序 2편, 雜著 6편, 祭文 3편이 있고 권3-권4는 부록으로 권3에는 孝友錄(兄元福), 行狀(李光庭), 拾遺(李象靖), 墓誌(崔暉), 墓表(5대손 德涵), 續三綱行實, 聞韶誌, 祭墓文(安應昌), 藏待書院奉安文(李玄逸), 常享祝文(李惟樟), 風詠樓上梁文(洪萬朝), 尼山舊院廟宇上梁文(南夢賚) 등이 보이고, 권4에는 손자 悅道가 편집한 <師友錄>과 權相一의 <跋文>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신원록의 墓表를 5대손 進士 申德涵(『禹烈女傳』의 작자)이 썼음이 주목된다.

해 겨울 全州判官에 임명되어 呂氏鄉約을 실시하고 小學과 家禮를 강론하는 등 풍속교화에 힘썼다. 1626년 형조, 예조정랑을 거쳐 司諫院 正言이 되어 10조에 달하는 時弊를 進達하였다. 司憲府, 司諫院에서 요직을 역임하고 1627년 정묘호란 때 正言(정6품)으로 있으면서 척화를 주장하여 최명길 등의 주화론을 극력 배격하였다. 辨誣使로 假道에 가서 청과의 和議가 본의 아님을 역설하여 明將의 의혹을 풀었고 1628년 예조정랑에서 시강원문학과 弼善을 거쳐 掌書이 되었다가 1631년 修撰이 되었으나 사임하였다. 1646년 都承旨(정3품)를 추증받았다.<sup>15)</sup> 문집으로 『晚悟集』(목활자본, 10권 5책)이 남아있다.

14세 신덕함의 조부 至(整로 고침)(광해군 13년, 1621~현종 6년, 1665)의 字는 子善이며 通德郎(정5품)을 지냈다. 天資가 醇厚하였으며 생업을 돌보지 않고 재산을 가벼이 여겼다. 永川 李氏와 혼인하여 5남 2녀를 두었다.

15세 신덕함의 부친 申休錫(인조 18년, 1640~현종 13년, 1672)의 字는 美伯이고, 宣務郎(중6품)을 지냈다. 天性이 孝友하였으며 부모님을 봉양함에 어그리짐이 없었다. 부친이 병들자 3년간 옷을 벗지 않았으며, 손수 약을 달여 드렸다. 그러나 병이 더욱 심해지자 밤낮으로 걱정하며 거의 침식을 꾀하다시피 하였다. 자신이 대신 아프기를 분향하며 하늘에 빌었다. 喪을 당하자 3년간 피눈물을 흘렸으며 일찍이 옷지를 앓았다.<sup>16)</sup> 그의 청렴결백함은 梅堂公의 家法을 이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申氏孝子가 다시 나왔다’ 라고 하였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어린 형제 자매가 많았으나 모두 잘 양육하여 때가 되면 혼인시켰다. 외조부모가 그를 길러주시자 은혜를 의로써 보답하여 외조부모상에 暮年服을 입고 心

15) 申達道, 『晚悟集』(『退溪學資料叢書』 25) 참조.

『慶尙道邑誌』의성현 인물조, 370쪽 참조.

16) 『慶尙道邑誌』의성현 효자조 참조.

喪 3년을 하였다. 이와 같은 효행으로 鄉과 道에서 그의 효행을 추천하였다. 豊山洪氏와 혼인하여 슬하에 2남(德涵, 德泳)을 두었다.

16世 작자 신덕함은 숙종 10년(1684) 28세 때 生進兩試에 모두 합격했으나 문과시험에는 계속 실패함으로써 결국 벼슬을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그는 좌절하여 스스로 호를 龔瘖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의 문장력이 뛰어났음은 그의 친구들이 모두 인정하였다. 『禹烈女傳』을 보면 그가 中國故事, 詩傳 등에 매우 밝았으며 문장력도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천성이 孝友하였으며, 17세에 부친상을 당하였으나 居喪執禮가 成人과 다름이 없었다. 어머니를 봉양함에 얼굴에 어그러짐이 없었고 나이들어 서도 끝내 해이한 빛이 없었다. 南陽洪氏와 혼인하여 슬하에 2남(學模, 聖模)을 두었다.

이상에서 볼 때 신덕함의 가계는 조상 대대로 중앙과 지방에서 벼슬을 해왔으나 본인은 관직에 나가지 못했다. 그리고 효자가 많이 배출된 집안임을 알 수 있다. 즉 5세 申祐와 11세 申元祿의 경우는 효자로서 旌閭가 세워졌고, 부친 申休錫도 효자로 널리 알려졌다. 신씨 가문의 이러한 효행의식이 신덕함의 『禹烈女傳』 집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慶尙道邑誌』의성현 인물조를 보면 모두 54명(고려 13명, 조선 41명)의 인물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申德涵 가계의 인물로서 모두 10명이나 수록되어 있다. 申元祿(祐 후손), 申之悌(祐 후손), 申達道(元祿의 孫子), 申悅道(達道 아우), 申弘望(之悌의 子), 申圭(達道の 子), 申適道(효자 元祿의 孫子), 申在(修撰 達道の 아들), 申瑠, 申濂(修撰 達道の 曾孫)이 그들이다. 그리고 효자조에 申元祿, 申休錫이 실려있다. 따라서 신덕함의 집안 인물이 邑誌에 많이 등장함으로써 의성현에서의 鵝洲 申氏의 영향력과 아울러 신덕함의 가문이 의성지방에서 명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작자 신덕함의 저술 동기를 살펴보면, 우씨 열녀가 태어나고 성

장한 義城縣 東村 店池洞은 의성에서도 사대부가 살지 않는 極東 골짜기였다. 이러한 궁벽한 시골마을에 천한 신분으로 건문도 없이 節孝智勇(절개, 효, 지혜, 용기)을 겸비한 우열녀의 행실은 옛 열녀보다 뛰어났으며, 하늘에서 타고난 열녀라고 크게 칭찬하였다. 17) 그리하여 우열녀의 모든 행실을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우열녀의 행적이 묻혀 사라지지 않도록 널리 알려 열녀 풍속을 권장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 Ⅲ. 『禹烈女傳』의 내용

#### 1. 결혼과 남편의 죽음

우열녀의 姓은 禹氏이고 이름은 末叱眞<sup>18)</sup>으로 효종 8년(1657)에 목수의 딸로 태어났다. 후자는 成均館 祭酒 禹倬<sup>19)</sup>의 후예라고도 한다. 아버지 莫卜은 대대로 義城縣 東村 店池洞里에 살았다.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남다른 자질이 있었다고 전한다. 부모를 곡진하게 사랑하였으며 항상 어머니결을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사람들과 망령되어 交遊하지

17) 『禹烈女傳』 24~29쪽 참조.

18) 『慶尙道邑誌』에는 이름의 한자가 다르게 나오고 있다. 즉 末叱進이라 되어있다.

19) 禹倬(원종4년, 1263~충혜왕 3년, 1342)의 본관은 丹陽이고 호는 易東, 시호는 文僖이다. 세상에서 ‘易東선생’이라 일컬어졌다. 고려 충렬왕 16년(1290)에 문과에 급제, 寧海司錄이 되어 妖神의 사당을 철파하고, 이어 監察糾正을 지냈는데, 1308년에 충선왕이 淑昌院妃(父王의 후궁)와 밀통하자 監察糾正으로서 이를 極諫하였으나 듣지않자 고향에 돌아갔다. 충숙왕의 여러번에 걸친 소명으로 다시 成均 祭酒로 致仕하였다. 당시 원나라를 통해 정주학에 관한 서적을 들여왔으나 이를 해득할 자가 없자 이를 연구 해득하고 후진을 가르쳤다. 經史, 易學은 물론 卜筮에도 통했다(『역주 고려사』 卷109 列傳 卷第22 禹倬 276~277쪽 참조).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非凡한 女兒임을 알 수 있었다.

성장하면서 말과 용모가 端直하고 志操가 高潔하였다. 비록 그 친족이라도 일찌기 남자와 더불어 물건을 주고 받거나 옷지를 얹었다. 항상 떼지어 모여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피하였으므로 다른 사람한테 지적 받지 않았다. 같은 마을에 거주한 사람 또한 그의 얼굴 보기가 드물었다.<sup>20)</sup> 『禹烈女傳』의 그녀에 대한 이와 같은 소개에서 열녀는 성장과정에서부터 남과 달랐음을 알 수 있다.

### 1) 도적의 침입

숙종 3년(1677) 그녀의 나이 21세 때 安東 梨谷人 金德立과 결혼하였다. 그녀는 시부모를 孝로써 봉양하고 남편 섬기기를 공경으로 하였다. 몸소 우물을 길고 절구를 찼어 맛있는 음식으로써 빠짐없이 공양하였다. 베짜는 일을 부지런히 하여 갓옷과 갈옷으로 계절마다 봉양하였다. 宗堂을 대접하는 일과 이웃마을과 교제함에 있어서도 또한 반드시 誠信으로 하여 모두에게 歡心を 얻었다. 시부모는 매우 만족하게 여겨 항상 우리집의 賢婦라고 칭찬하였다. 德立과 더불어 同居한지 7년 만에 딸 하나를 낳았는데 이름을 今分이라 하였다.<sup>21)</sup>

숙종 9년(1683) 어느 날 도적이 갑자기 그녀의 집에 들어 와 남편 덕립이 도적의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열녀는 맨몸으로 칼을 무릅쓰고 달려 남편을 구하였으나 같이 重傷을 입었다. 그러나 남편은 이내 곧 사망하였다. 그녀는 같이 죽지 못함을 통분으로 여겨 주야로 號哭하여 물과 미음을 입에 넣지 않고 따라 죽고자 했으나 가족이 지키고 보호하여 죽지를 못했다.<sup>22)</sup>

20) 『禹烈女傳』 1쪽 참조.

21) 『禹烈女傳』 1~2쪽 참조.

22) 『禹烈女傳』 2쪽 참조.

여묘 3年 동안에 일찍이 한번도 옷지를 앓았고, 이미 服을 마쳤는데도 纓服을 버리지 않고 상자에 두었다가 매달 朔望 때에 服을 입고 땀에 임하기를 初喪 때와 같이 하였다. 이와 같이 그녀는 도적으로 인해 남편이 위기에 처한 것을 구하려다 함께 중상을 입었으나 남편이 결국 죽음으로써 과부가 되었다. 그 후 굶어서 따라 죽고자 했으나 가족이 만류하여 죽지를 못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17세기에 적지않게 나타난다. 23)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남편을 구하려다 아내가 대신 죽은 경우이다.

2) 양반 아무개가 정절을 빼앗고자 함

그녀는 과부가 된 후에도 얼굴모습이 여전하였고 行誼는 더욱 빛났다. 그러자 이웃에 사는 兩班 아무개가 보고 사모하여 정절을 빼앗고자 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그녀는 분개하여 곧 간직한 纓服을 입고 訴狀을 들고 官府에 나아가 獄을 이룰 것을 請하였다. 辭氣가 凜烈하고 情意가 痛切하였으며 콧물과 눈물을 흘리며 一府를 감동케 하였다. 府伯이 의롭게 여기고 곧 그 訴狀을 취하여 보고 판결의 뜻을 써서 주니, 그 양반은

---

23) 『顯宗實錄』 권15, 현종 9년 12월 정축조에 보면 木只의 처 一香은 남편이 늦쇠에게 피살되려 할 적에 몸으로 덮어 보호하다 칼을 맞아 죽고 남편은 죽음을 면하였다. 旌閭를 세워서 표창하도록 하였다. 위의 책 권22, 현종 15년 정월 갑오조에는 도적의 칼날에 남편을 보호한 金化의 品官 秦繼昌의 처 권씨에게 旌閭門을 내린 기사가 보인다.

『顯宗改修實錄』 권28, 현종 15년 7월 병인조를 보면 경상도 金山의 선비 崔繼完의 처 許氏가 강도의 칼날에 남편을 구한 사실이 알려져 旌閭를 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輿地圖書』에 보면 丹城의 尹世茂의 처 이씨는 火賊을 만나자 칼날을 무릅쓰고 몸으로 남편을 덮어 대신 칼에 찔려 죽었다. 이에 旌閭하였다(『輿地圖書』 경상도 단성현 인물조). 靈山의 護軍 李是樞의 처 김씨는 火賊이 돌입하여 남편을 칼로 범하니 김씨가 몸으로 덮어 적이 김씨의 팔을 베었다. 김씨는 다리로 또 가리니 적이 다리를 베어 몸이 온전한 데가 없었다. 적이 노하여 남편을 죽였다. 김씨는 오히려 살았으나 먹지 않고 5일 만에 죽었다. 숙종 32년에 旌閭하였다(『輿地圖書』 경상도 영산현 인물조).

놀라고 두려워하여 곧 그만 두었다.<sup>24)</sup>

이로부터 그녀는 자기를 도모하는 자가 많고 자기 몸을 지키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깊이 密室에 있으면서 경계를 매우 엄히 해서 가만히 칼을 갈아 베개 옆에 두고 잠시 出入하더라도 또한 반드시 칼을 가지고 다녔다. 遠近에서 그녀의 義烈心에 감복하여 감히 도모하는 자가 다시는 없었다.<sup>25)</sup>

### 3) 시어머니와의 이별

숙종 19년(1693) 겨울에 시어머니께 울며 말하기를 “제가 薄命하여 일찌기 남편을 잃었는데 아직 죽지 않고 남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직 아버님께 의지하였는데 이제 불행히도 또 아버님을 잃었으니 외로운 인간은 외로운 그림자도 의탁할 때가 없습니다. 이미 아들도 없고 다만 어린 딸만 있으니 사는 도리가 어렵고 자취가 외롭고 위태롭습니다. 원컨대 친정으로 돌아가 아버지 병환을 간호하며 몇 년 머무르다가 이 딸이 비녀를 꽃게 되어 진실로 아름다운 사위를 얻게 되면 와서 어머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지금 비록 잠시 떨어져 있어도 후에 마침내 반드시 봉양할 것입니다. 또한 어머님 氣力이 아직 건강하므로 날이 지난 후에 돌아와 봉양하더라도 또한 아직 늦지 않을 것입니다. 친정 아버지께 보답할 날은 짧고 어머님을 봉양할 때는 길다고 봅니다. 원컨대 슬퍼하지 마시고 안심하시고 기다리십시오.” 하였다.<sup>26)</sup>

여러 숙부님과 여러 이모님을 돌아보고 목매어 우니 시어머니가 께안고 울면서 말하기를 “신부가 나의 집에 들어온 이래로 나를 부지런히 섬겼고 지극히 봉양하였다. 서로 아끼는 情이 모녀와 다름이 없었는데 내

---

24) 『禹烈女傳』 3쪽 참조.

25) 『禹烈女傳』 3~4쪽 참조.

26) 『禹烈女傳』 4쪽 참조.

아이가 급히 갔으니 네가 의지할 곳이 없구나. 家事가 기울어지고 또한 서로 돕지 못하니 신부가 가는 길이 형편상 마지못할 바이다. 세상에서 나의 삶도 남은 날이 많지 않고 이제 곧 장차 멀리 떠난 후에 언제 만날 것인가” 또 손녀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내 아들 혈육이 비록 이 한 몸이나 길러 가르치기를 한결같이 신부가 孝敬하는 것 같이 하고, 자라서 시집가게 되어 며느리와 손녀가 함께 돌아와 나를 보러온다면 비록 죽은 후라도 살아있는 해와 같을 것이다.” 하였다.<sup>27)</sup> 이리하여 그녀는 시어머니와 뒷날을 기약하며 시집에서 나와 어린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과부가 된 젊은 여성들이 시가를 떠나 친정식구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리고 양반 여성보다 양인이나 천인신분의 여성들이 과부가 된 뒤 경제적 조건의 영향으로 시가를 떠나 친가로 갔다.<sup>28)</sup> 우열녀의 경우도 남편이 죽은 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어머니와 헤어지게 되었으며, 헤어질 때 우열녀는 뒷날에 봉양할 것을 기약하고, 우선 늙고 병환중인 친정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 친가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 2. 수절과 개가 권유

그녀는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 울타리 곁에 움막을 짓고 품팔이로 생활하였다. 남에게 衣食을 의탁하였으나 老父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供養하였다. 계모를 섬김에 나를 낳아준 생모와 다름이 없었다. 항상 姑婦가 서로 떨어져 있어 定省을 오래 비우자 깊이 恨이 되었다. 그리하여 인편이 있으면 반드시 안부를 묻고, 문안할 때는 반드시 음식을

---

27) 『禹烈女傳』 4~5쪽 참조.

28) 정지영, 2002 「조선 후기 과부의 또 다른 선택」, 『역사와 문화』 5, 235~239쪽 참조.



보내드렸다. 음식을 보내드리고 안부를 묻고 하기를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매양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남편의 忌日과 생신, 四時節祀에 깨끗이 하고 祭需를 풍성하게 준비하여 친히 가서 제사를 받들었으며 비록 질병과 사고가 있더라도 일찌기 제사를 지내지 않은 적이 없었다.<sup>29)</sup>

여기에서 열녀의 생활 형편이 품팔이 생활로 무척 어려웠으며, 그러한 어려운 생활 환경속에서도 老父와 繼母를 잘 봉양한 효녀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남편과 시아버지에 대한 제사도 정성껏 지낸 효부였음을 알 수 있다.

#### 1) 군인 이영발의 청혼과 협박

숙종 20년(1694) 봄 같은 縣 畝谷에 군인 李英發이 홀아버리로 살고 있었다. 본래 強暴하였으며 바야흐로 부친상을 당하였는데도 열녀의 어짐을 듣고 그녀를 얻고자 하였다. 드디어 아침을 기다려 軍服을 입고 긴 칼을 차고 애꾸눈을 가리고 대문 앞에 나가서 莫卜을 만나니, 莫卜이 신을 거꾸로 신고 나와 上座에 모셔서 손을 올려 공손하게 사례하며 곧 아이를 불러 술을 가져오게 하였다. 술이 세 번 돌자 영발이 술잔을 멈추고 미소를 머금으며 천천히 막복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홀로 지냄을 그대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나의 家計도 그대 또한 들었을 것이다. 재물을 쌓아 놓은 것이 비록 많지만 부엌일을 주관할 사람이 없고, 항아리에는 쌀이 가득하지만 벌레와 쥐가 먹고, 상자 안에 가득한 鑰器는 낮에 이웃 부인들이 훔치기도 하니 사람을 얻어 함께 지키는 것이 하루가 급하다. 간접적으로 전해 들으니 그대 따님의 얼굴이 매우 아름답고 마음이 깨끗하며, 재주는 바느질을 익혀 군복을 만듦에 손색이 없을 것이고 음식을 장만해 군인들에게 이바지해도 부끄러울 것이 없을 것이라 하니, 과연 사

29) 『禹烈女傳』 5~6쪽 참조.

람들의 말과 같다면 죽히 우리 집에 마땅한 사람일 것이다. 부부간의 좋은 인연맺기를 원하니 그대의 뜻은 어떠한가” 하였다.<sup>30)</sup>

莫卜이 얼굴을 찡그리고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생각컨대 못한 자식이 자기 뜻을 고집하고 미혹하여 깨닫지 못하니 내 딸은 石佛 같아서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이지만 또한 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훌륭한 덕망을 저버릴까 두려우니 이에 걱정이 됩니다.” 하니 영발이 성난 빛으로 칼을 어루만지며 疾視하며 말하기를 “나의 地望으로 너를 寒微함에서 구할텐데 너의 道理에 있어 命을 받는데 힘쓰지 않고 오히려 다른 뜻을 품고 이와 같이 핑계를 대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店民은 어둡고 완고하여 깨우치기 어렵다 하더니 과연이로다. 너의 자녀의 혼인은 내가 다 주관하여 하는데 오직 이 딸에게 있어서는 ‘나는 어찌할 수 없다.’ 고 말하니 이것은 거짓말이다. 나의 계획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반드시 너의 딸을 얻고서야 그치겠다. 만약 너의 딸이 능히 죽음으로 나를 거절한다 해도 나를 거절 못할 것이니 속히 너의 딸을 들이라” 하니 막복이 비록 不可함을 알지만 감히 다시 말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영발은 봄부터 여름이 가는데 날로 오지 않음이 없으므로 一家에 근심과 惝恍으로 해야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sup>31)</sup>

요컨대 군인 이영발의 청혼과 협박으로 열녀의 가족은 물론 온 집안 나아가 이웃사람들에게까지 큰 근심에 쌓이게 되었던 것이다.

## 2) 이웃부인의 개가 권유와 우열녀의 수절 의지

계모는 딸과 서로 잘 지내는 이웃 부인에게 부탁하였다. 이웃부인은 밤에 잠자리에 나아가 비유를 들어가며 천천히 달래어 말하기를 “人生에는 끝이 있고 日月은 無情인데, 黃塵과 白骨 지하의 소식은 아득하고 붉

30) 『禹烈女傳』 7~8쪽 참조.

31) 『禹烈女傳』 9쪽 참조.

은 얼굴 검은머리는 거울 속의 청춘으로 유유히 흘러가게 되니, 어찌 헛되이 靑春을 보내어 스스로 고통을 이와 같이 하는가. 하물며 남자는 모두 지아버가 될 수 있지만 아버지는 하나 뿐일 따름이다. 한갓 亡夫의 신의를 지키고 老父의 근심을 거둬 무겁게 끼침이 옳은 일인가. 또 가장 염려되는 것이 있으니 그대의 아름다운 바탕은 하늘이 실로 낳은 것이다. 좋은 소문이 오래부터 드러났고, 향기로운 이름이 멀리까지 퍼졌으니, 담구멍을 뚫고 서로 엿보는 자가 이미 이웃의 서쪽과 성곽 동쪽에 가득하다. 李郎은 聞韶(義城의 옛지명)의 巨富이며 畝谷의 名族으로 한눈이 비록 애꾸눈이지만 그 거동은 武人답지 아니한가. 아름다운 두분이 서로 합하여 충신토록 富를 누리고 즐겁게 지낸다면 촌막에서 외롭게 잠자며 품팔이로 살아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반복하여 曉諭하고 여러번 당부하였다.<sup>32)</sup>

그러나 그녀는 길게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사례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禽獸와 다른 것은 禮義가 있기 때문이다. 男女가 있음으로서 夫婦가 있고, 한번 더불어 같이 함은 충신토록 고치지 않는 것이다. 진실로 定行이 없고 한갓 남을 기쁘게 함을 일삼아서, 때에 따라 變態한다면 예의는 亡하는 것이요 倫理는 끊어지는 것이다. 이 무리가 비록 옷을 입고 있으나 禽獸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대저 내가 하는 바가 위로는 아버지께 근심을 끼치고 중간에는 가문에 禍를 미치고 아래로는 이웃에게 폐를 끼치니 지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不變하고 더욱 初心을 가다듬어 열 번 넘어지고 아홉 번 쓰러져도 일찌기 원망하고 후회함이 없으며, 못사람들이 조소하고 여러 사람이 꾸짖어도 마침내 흔들릴 수 없는 것은 이 어찌 우직하게 小信을 지켜 老父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겠는가. 내가 이에 차마 못할 것이 있으니 金郎과 손을 잡고 맹세하기를, 살아서

---

32) 『禹烈女傳』 9~10쪽 참조.

는 同室하고 죽어서는 同穴하며 生死를 같이 하고 종시 변치말자고 하였다. 이제 그 사람이 이미 죽었으나 그 말은 오히려 남아있다. 남편이 알고 내가 알고 하늘이 알고 神이 아니 내가 아니할 바는 하늘이 싫어하는 것이다. 또한 나로 하여금 여기에 이르게 한 것은 운명이다. 나는 마땅히 순리적으로 받아들여 오직 의롭게 돌아갈 것이니, 의롭지 않고 富하고 또한 즐거움은 나에게서 뜯겨나간다. 비록 玉 같은 사람과 상자에 金이 가득히 있다 해도 내 어찌 차마 나의 마음을 바꿀 것인가. 지극히 약한 것은 몸이고 지극히 강한 것은 뜻이다. 三軍은 가히 빼앗을 수 있지만 이 뜻을 빼앗기는 어렵다. 만약 혹 이치가 궁해지고 힘이 屈해서 몸과 명분을 보존하기 어려우면 마땅히 한 칼로 목숨을 버려 亡人을 지하에서 볼 것이니 무슨 어려운 일이 있겠는가. 짝으로 지냄을 즐기고 홀로 있음을 슬퍼하는 것 내 어찌 다른 사람과 다르겠는가. 그대도 또한 가령 그대 몸이 처한 것으로써 나의 심정을 헤아려 보시오” 하니 이웃부인은 얼굴을 붉히고 물러났다. 그리고 감히 다시는 보지 않았다.<sup>33)</sup>

조선 후기 양인 이하의 여성들은 개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양인이하의 하층 여성의 경우 양반 여성과 달리 개가를 해도 실질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대부분 개가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얻는 편을 선택하였다고 한다.<sup>34)</sup> 그러나 우열녀는 이웃부인의 적극적인 개가 권유에도 불구하고 개가를 부도덕한 것으로 생각하며 중신토록 수절할 뜻을 강하게 밝혔다.

### 3) 이영발의 결혼 독촉과 거짓말

영발이 우열녀의 집에 왕래함이 백여 일이 되었다. 중간에 큰 고개가 있었는데 영발은 매양 고개 위 꽃나무 아래에서 쉬었다가 갔는데, 나무하

33) 『禹烈女傳』 10~12쪽 참조.

34) 정지영, 2002, 앞의 논문, 253~256쪽 참조.

러가는 樵童輩들이 자주 보고서 익히 알고 서로 가리켜 말하기를 ‘探花喪主’라 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이를 전해 듣고 웃었다. 이 때에 산의 꽃이 다 떨어지고 계곡의 버들이 무성하였으며 꾀꼬리가 서로 날고 때까치가 조화롭게 울었다. 영발은 사물이 혼인을 생각함을 보고 春情을 이기지 못하여 이에 곧 칼을 내리치며 맹세하고 곧 바로 池洞으로 달려가 마을 문앞에 서서 부채를 흔들며 크게 소리쳐 말하였다. “오직 너 막북 老賊과 한 마을의 여러 놈이 모두 내 말을 들었거늘 너희들은 악을 같이하여 서로 돕고 아울러 힘으로 나를 거절하니 이 무슨 心術이며, 이 무슨 道理인가. 나의 上番이 멀지 않으니 아들, 손자, 아우, 조카의 이름과 나이를 일일이 써서 本司에 고하고 모두 軍簿에 기록하여 곧 大將軍에 접수한다면, 傳書하여 本道에 달려가 전하고 10일이 안되어 마땅히 本縣에 도착할 것이다. 이 때에 官승이 불같이 사납게 차출함이 호랑이 같아서 해당관리가 너물을 찾고 軍長은 禮로 책망하고 갈 때 노자돈을 주어 보내는데, 이렇게 되면 破産해서 집은 기울이게 되고 마을은 시끄럽고 이웃이 보호되지 않는 즉, 이러한 갈림길에 이르렀을 때 비록 나에게 딸을 들고 조금 이근심을 늘어뜨리고자 하나 오히려 얻을 수 있겠는가. 너희들은 利害를 생각해 보았는가. 또한 어제 밤에 女와 함께 눈짓으로 뽕나무 밭에서 만나기로 기약하고, 한 방에서 나와 함께 잠을 자고 닭우는 소리에 일어나 옷을 남기고 이별하였으니 너는 나를 믿지 못하거든 나와서 내 옷을 보거라. 女는 혹 부끄러워하여 곧 나와 함께 약속한 사실을 고하지 않으나 어찌 능히 마침내 피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에 마을 老少가 다 이 말을 듣고 魂이 몸에 붙어 있지 않고 발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아 서로 莫卜에게 고하기를 “公은 홀로 영발의 말을 듣지 못했는가. 영발의 사람됨이 고집세고 이리와 같이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니, 이는 헛된 말이 아니면 반드시 中傷일 것이다. 公의 집 小姐가 이禍의 발단을 빚었으며, 이웃사람으로 하여금 연못 속의 고기를 면치 못하게 하였으니 어찌 재앙이 아니겠

는가. 이 근심을 彌縫하는데 공이 아니면 능히 못할 것이니, 열녀도 사람이니 하늘같은 그대 말을 믿지 않겠는가. 옷을 남기고 또한 거절하고자 하면 이것은 두 마음인데 그 무슨 절개가 있겠는가” 하니 莫卜은 부끄러워 곧바로 땅을 뚫고 들어가고싶은 심정이었다.<sup>35)</sup> 이처럼 영발의 험박과 거짓말로 열녀의 부친 莫卜과 이웃사람들은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 4) 열녀의 결정

##### (1) 영발의 칭혼을 받아들이기로 함

열녀는 영발의 거짓말과 아버지 막복이 분하여 죽고자 함을 보고 스스로 벗어나지 못함을 헤아렸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아버지를 뵈고 옷깃을 여미고 말하기를 “하루저녁에 이웃부인의 말을 생각하니 또한 큰 이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命은 天命인데 天命을 위반하기 어려우니, 저의 천한 몸을 지키고자 하여 오래도록 천명을 어겼으니 죄됨이 크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西行하여 舍谷으로 가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록 저의 짝이 아니지만 저는 마땅히 저사람을 쫓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것을 고하여 친족을 보존하겠습니다. 저의 뜻이 이미 정해졌으니 원컨대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니 막복이 크게 기뻐하여 손으로 등을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진실로 내 딸이다” 하고 小子로 하여금 영발에게 달려가 고하게 하니 영발이 바야흐로 술잔을 들고 무료함을 달래면서 벽을 향해 누워있다가 이 말을 듣고 참새같이 뛰어 일어나 말하기를 “女の 뜻이 이와 같은데 어찌 오랫동안 나를 피곤하게 했는가. 날로 열녀를 찾느라고 양쪽 신발이 이미 닳았고 밤마다 그녀를 생각함에 간장이 또한 끊어졌다. 다시 며칠 더 지체되었다면 목숨이 거의 다 했을 것이다. 하늘이 그녀의 속마음을 달래어 다행히

---

35) 『禹烈女傳』 12~16쪽 참조.

도모함을 얻었으니 오늘 저녁이 무슨 저녁이오. 無妻有妻라, 이에 봄부터 큰 계책을 세웠으나 항상 아득히 합하기 어려움으로 여겼더니 뜻있는 자에게는 일이 마침내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곧 막복이 누운 곳에 나아가 再拜하고 사례하였다. 그리고 말하기를 “앞드려 嘉命을 받들어 그대 딸을 허락하여 주니 뜻밖이라 마음속에 감사함이 맺히는구나. 이제 딸이 나의 집 부인이 된다면 大人은 나에게 碧峯巖(푸르고 높은 산)가 되니 감히 아버지 예로서 섬기지 않겠습니까. 근일에 소요를 일으킨 것은 자못 不敬했으나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비록 후회한들 어찌 바라는 바 미칠 수 있겠습니까. 小子 無良하니 大人은 어여삐 봐주십시오. 피차 조그만 허물은 흘러가는 동쪽 물에 붙이고 大義를 함께 하여 길이 좋게 서로 잘 지낸다면 어찌 다만 小子의 다행일 뿐이겠습니까. 또한 그대 따님의 福이 될 것입니다.” 하니, 막복이 누워서 빙그레 웃으면서 말하기를 “다만 그대가 거듭 우리 가문을 일으켜 준다면 내 딸은 부부의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나의 아들들은 의지할 곳을 얻게 될 것이니, 이것이 내가 평생 지극히 원한 것인데 이제 모두 내 뜻과 같이 되니 그 나머지 자잘한 것은 다시 무엇을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로부터 家內가 모두 편안할 것이고 이웃의 비방도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하고 莫卜이 날로 영발과 함께 같이 혼사일을 의논할 뿐이었다.<sup>36)</sup>

결국 열녀가 영발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하자 부친 莫卜은 크게 기뻐하였으며 영발 또한 매우 만족해 하였다.

## (2) 족당과 이웃사람들에게 酒宴을 베풀

그 후 그녀가 쌀독 항아리를 다 비워서 크게 酒食을 마련하여 족당과 이웃마을 사람들을 모두 청하여 아버지와 함께 하게 하고, 사람들 자리를

36) 『禹烈女傳』 16~18쪽 참조.

정하고 음식을 드릴 때 열녀가 꿰어앉아 아버지 앞에 나아가더니 술잔을 받들어 아버지를 위해 축수하고 두루 座中에게 절하였다. 모두 다 감사함을 말하고 시끌하게 서로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시고 즐겼다. 그런데, 홀로 이웃사람으로 나이 많고 덕있는 金玨同이란 분이 힘써 맞이해도 가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겨 물어보니, 玨同이 탄식해 말하기를 "내가 이 마을에 오래 살아 이제는 白首가 되었다. 禹열녀의 뜻을 내가 일찌기 아니, 그 열녀의 뜻은 굳기가 金石과 같고 늠름함은 또한 霜雪과 같다. 어찌 영발한테 흔들린 바가 되어 갑자기 십수년 고통을 겪으며 지켜온 절개를 훼손당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음식을 많이 베풀었으니, 더욱 그 열녀의 뜻이 이미 결정된 것을 알 것이다. 내가 차마 그 음식을 먹고서 그녀가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 하였다.<sup>37)</sup>

요컨대 그녀는 자결을 결심하고 족당과 이웃사람들에게 酒宴을 베풀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녀의 뜻을 이웃사람으로 나이 많고 덕있는 金玨同은 알고서 酒宴에 나아가지 않았던 것이다.

### (3) 딸과의 이별

이미 술자리를 마침에 그녀는 방에 들어가 시렁위에 대나무 옷 상자를 내려서 새 옷, 헌 옷을 다 꺼내더니 둘로 몽치를 나누어서 딸에게 주며 말하기를 "하나는 내가 입고, 하나는 마땅히 뒤에 입을 일이 있을 것이다" 하니, 소녀가 이를 알아 들었다. 이에 딸을 어루만지며 크게 통곡해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가 칼에 맞아 세상을 떠났다. 무슨 마음으로 나 혼자 이 인간 세상에 살아있겠는가. 너의 아버지 뒷일을 모두 너한테 부탁하게 되었으니 외롭고 어린 것이 어머니를 잃어 이치로 보건대 응당 온전키 어렵겠구나." 하고 고개 숙여 배회하였다. 그리고 "차마하지 못함에 너에

---

37) 『禹烈女傳』 18~19쪽 참조.



게 의지해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았다. 너를 힘써 젖먹여 키워서 날로 네가 자라기를 바랬고, 네가 어른이 되기를 기다려 너를 잡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할머니를 뵙고 너의 아버지 제사를 받은 연후에 내가 죽을 때 웃음을 머금고 죽기를 바랬더니, 뜻밖에 이제 도리어 가혹한 화를 만났으니, 저 교활한 사람이 나를 놓아두지 못하는구나. 거듭 아버지 뜻을 어기게 됐으니 나의 한번 떠나는 길이 번민스럽구나.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이 무너지니 골육이 정신없이 흩어지는 것 같다. 막상 떠나고자 하니 마음이 타는 듯 하구나. 내가 떠난 후에 너는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 너의 어미가 본보기가 없어서 비록 법 받을 만한 것이 없지만 내 평생 평일에 남에게 악한 일은 하지 않았다.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근색하지 않고 지냈는데, 이제 차마 이별을 할 수 없구나.” 하였다. 친정 아버지를 보면 애써 좋은 얼굴을 하고, 경계하는 말씀을 공손히 받들었다.<sup>38)</sup>

그녀는 자결을 결심하고 어린 딸에게 이별을 슬퍼하며 어머니로서 부탁의 말을 하였다.

### 3. 자결의 시도와 소생

영발이 그 후 그녀의 집에 와서 행장을 꾸려 같이 자기집으로 돌아가고자 한대, 단 한시가 지나감이 3년과 같았다. 그녀는 어려운 빛이 없이 집을 떠나 갔다. 수십 보 정도 감에 두 갈래 길이 나타나니 영발이 큰길을 두고 가지 않고 산골짜기 조그만 셋길 사람이 없는곳으로 끌고 가니, 그녀가 그의 뜻을 알고 곧 다시 돌아와서 그 오라비 末叱男을 불러서 함께 가게 되었다. 그녀가 걸가는 도중에 영발과 함께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氣色도 편안하며 行步도 조용하대 다만 영발의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을

38) 『禹烈女傳』 19~20쪽 참조.

자주 자주 자세히 보았다. 곧 영발의 집이 가까워지자, 영발이 먼저 집에 들어가고, 그녀가 따르고 오라비 末叱男이 마지막에 따라 들어갔다. 영발이 모친을 불러 말하기를 “새신부가 왔습니다” 하니 모친이 정신없이 나오더니 마루를 청소하고 검푸른 빛깔의 긴옷을 입고 단풍빛의 감투를 쓰고 덕석위에 단정히 앉아서 곧 시어머니의 예를 받을려고 할 때, 그녀가 문에 이르러 서성거리며 들어가지 않거늘, 영발이 읊하고 인도하면서 말하기를 “원컨대 남자는 집안에 들어와 마루에 올라 어머니께 배례하십시오” 하니, 그녀가 命을 받고는 문득 正色하고 서서 엄한 소리로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이놈! 이놈!”하고 “네가 사람의 자식이 되어 喪中에 여색을 탐내는 일이 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남의 아버지를 겁박해서 그의 딸을 꺾박하여 절개를 빼앗는 것이 차마 할 수 있는 일인가. 또한 네가 일찍이 新寧 女人을 어지럽게 해서 3년을 감옥살이하고 거둑 또 관가에 문초를 당한 일이 있었는데, 오히려 부족하게 여겨 또 나를 난행하고자 하느냐. 나의 절개를 지키는 일은 天地에 내 마음으로 맹세하였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 목숨 보전하기를 원치 않는다. 비록 나를 만 갈래로 목을 베더라도 또한 너를 따르지 않겠다. 짐승같은 놈아! 어찌 나를 속히 죽이지 않는가” 하고 곧 그의 칼을 빼앗아 스스로 찌르니, 손놀림이 전광같이 빨라 옆의 사람들이 손쓸 여가가 없었다. 흰 칼날이 이미 그녀의 가슴에 서 있었다. 곧 죽지 못하였고 마침내 영발한테 욕되는 바 될까 두려워하여 자기가 칼을 뽑아 다시 찌르려고 했으나 몸에 미치지 못하였다. 영발이 깜짝 놀라 쫓아가서 칼을 취하니, 과연 다시 찌르지 못했다. 오라비 末叱男이 가서 보니 열녀가 뜰에 쓰러져서 피가 땅에 그득하고 기절하여 있었다.<sup>39)</sup>

이 때에 마을 男女 老少들이 서로 함께 와서 이를 보고 영발의 母子에

---

39) 『禹烈女傳』 20~23쪽 참조

게 말하기를 “모진 사람아! 몹쓸 사람아! 이 여인이 이제 시집을 움에 모든 일을 순리로서 바르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흥피한 일을 지어서 사람들의耳目을 놀라게 하는가. 비록 혹 이 여인이 죽지 않았으나 더불어 한집에 살지 못할 것이다. 빨리 시신을 친정으로 돌려주고 오랫동안 머물러 두지 마시오” 하니 그날 밤 들것으로 그 집에 돌려보내 여러 가지로 치료하여 자못 다시 살아났다.<sup>40)</sup>

그녀가 이미 人事를 살필 줄 알고 본 정신이 돌아왔으나 크게 통탄하고 한스럽게 여겨 먹지 않고 스스로 굶어 죽고자 하였다. 이에 부친 莫卜이 주야로 곁에서 붙들고 울고 또한 식음을 전폐하고 딸과 함께 죽기로 기약하였다. 그리하여 그녀가 부득이 약을 먹어서 상처를 다스린지 반년여 만에 비로소 완치되었는데, 그의 왼쪽 가슴위에 칼 흔적이 얼룩덜룩 보였다. 任世章<sup>41)</sup> 院長이 때마침 이웃마을에 임시로 살고 있었다. 그는 소문을 듣고 놀라 이상히 여겨 좋은 약을 찾아 마련해서 치료를 잘 마치게 하였다. 그리고 곧 마을에 여러 사람을 불러 그 사유를 갖추어 官家에 알리게 하였다. 그러자 마을 불량배들이 물러나와 서로 함께 말하기를 “우리 점촌 백성들은 비록 발을 다투는 큰 송사라도 일찌기 관가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같은 작은 일로 번거롭게 고할 것이 있는가. 만일 이 사실이 관가에 들어가 죄를 추적하여 다스리게 된다면, 우리들이 비록 집에서 농사짓고자 한들 농사지을 수 있겠는가. 원장이 우리들을 잘못되게 할 것이다” 하고 모두 다 두려워 하여 달아나거나 또는 면전에서 임원장에게 협박한 후에 비로소 本官에 알렸다.<sup>42)</sup>

40) 『禹烈女傳』 23쪽 참조.

41) 『慶尙道邑誌』의 성현 인물조 370쪽을 보면 “任世章文康公張顯光外曾孫 五歲能屬文詞 鷄鳴盥巾 終日對案 沈潛性理書 朝廷薦宿儒首登科目無進就意揭朱子所書 忠孝堂三字以自省 晚入峽庄修鄉約峽氓化之 知有禮讓之風焉” 이라고 되어있어 任世章은 張顯光(명종 9년, 1554~인조 15년, 1637)의 外曾孫이 됨을 알 수 있다.

42) 『禹烈女傳』 23~24쪽 참조.

마침내 그녀는 영발의 집으로 따라 들어갔으나 마당에서 영발의 칼을 빼앗아 자결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소생하였다. 치료를 도운 임세장 원장이 그녀의 행실을 官家에 알리게 하였다.

#### IV. 작자의 우씨 열녀에 대한 평가

우씨 열녀가 살았던 17세기에는 여성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 사회적인 혼란과 무질서가 야기되자 질서회복과 안정추구의 방책으로 禮를 중시하게 되면서 유교이념이 강조되고 여성의 정절과 순종은 더욱 강화되었다. 17세기에 들어오면서 여성들 스스로 家門을 위해 殉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볼 때 남편 사후 종신수절한 열녀보다 殉節한 열녀가 훨씬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남편 사후 殉節한 유형으로는 목매어 죽은 경우, 굶어 죽은 경우, 독약을 마시고 죽은 경우, 물에 빠져 죽은 경우 등이 있다.<sup>43)</sup>

우열녀의 경우는 도적의 침입에 위협을 무릅쓰고 남편을 구하려다 함께 중상을 입었으나 결국 남편은 죽고 우씨는 살았으나 굶어서 殉節코자 했다. 그러나 가족의 만류로 살아남아 守節하게 된 특이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작자 신덕함은 우씨 열녀의 행실이 완비 되었다고 보았다. 즉 貞操를 굳게 지켜 죽어도 다른데 살려 가지 않는 것은 그녀의 절개인 것이며, 능히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비록 죽음도 사양하지 않음은 그녀의 효요, 위

---

43) 박주, 2004 「조선시대 경북지역의 열녀 사례분석」 『조선사연구』 13, 4~7쪽 참조.

힘에 당해서 변통스럽게 처리하여 거취에 마땅함을 얻음은 그녀의 지혜요, 칼날을 밟음을 감수하더라도 조용히 하여 급히 하지 않음은 그녀의 용기라고 하였다. 이 네 가지(절개, 효, 지혜, 용기)는 비록 스스로 독서하고 道를 말하는 大男子가 종신토록 힘쓸지라도 능히 하기 드문 것이라고 하였다. 열녀는 궁벽한 시골마을에 친한 부인으로 견문도 없이 이 큰 일을 스스로 헤아려 함은 옛 열녀보다 뛰어났다고 칭찬하였다. 그렇다면 이 열녀의 절행이 배우고 난 뒤에 억지로 한 것이 아니므로, 소위 하늘에서 타고난 열녀가 아니겠는가. 절개가 이와 같은데 자신 또한 온전히 보전치 못하고 원통함이 맺혔어도 고할 데가 없어서 가슴에 칼을 꽂았으니 슬픈 일이라고 하였다.<sup>44)</sup>

전일에 안동에 호소장을 보낸 것도 절개이며, 뒷날에 영발의 집에서 죽으려고 한 것도 또한 절개로서, 사람도 한 사람이고 절개도 같은 것이다. 전에 있어서는 아무 들림이 없었는데 후에 절개를 말하는 것은 生死의 행적이 달라 사람들이 절개를 말하는 것도 반드시 죽음에 있는 까닭이다. 이로 말미암아 말하건대, 하늘이 이 열녀로 하여금 위태함에 빠지게 하고 그의 몸을 잔인하게 하여 남의耳目을 놀라게 하여 멀고 가까운 데까지 전파가 된 것은 욕되는 일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일이니, 그 또한 무엇이 恨이 되겠는가. 혹 말하기를 이 열녀가 자기 집에서 죽지 않고 영발의 집에서 죽으려고 한 것은 흠이 된다고 하나 이것은 크게 그렇지 않다. 만일 이 여인이 영발을 거절하고 자기 집에서 죽는다면 친정 아버지가 반드시 슬퍼하고 상심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不孝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영발이 반드시 놀라고 원망하여 성냄을 옮기는 단서가 없지 않으니 이것이 근심이 될 것이다. 또한 열녀가 깊은 방에 들어가서 아무 말 없이 남몰래 죽는다면 그 마음은 비록 정결하나 그 자취는 나타나지

44) 『禹烈女傳』 24~25쪽 참조.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영발의 죄를 바로 잡을 수도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 열녀가 지혜 있음을 알 수 있다.<sup>45)</sup>

영발의 집에서 죽으려고 결심한 것은 첫째는 아버지의 命에 순종해서 그 참상을 보이지 않게 함이요, 또 하나는 영발의 속임수를 씻고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다 알게 해서 아버지로 하여금 나에게 恨됨이 없게 하고, 영발로 하여금 자기의 분노를 옮길 곳을 없게 하고 자 한 것이다.<sup>46)</sup>

소위 東村은 聞韶의 極東 산골짜기로 사대부가 사는 곳이 아니었다. 군자의 모습을 보고 듣지 못해서 사람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익혀서 한갓 인물의 짝 있음만 보고 절의가 무슨 일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이 여성의 일을 혹은 지적하기를 사납고 모질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또 말하기를 보잘 것 없는 작은 일이라고도 한다. 진실로 任公이 이 일에 대해 권장하고 크게 칭찬하며 이 일을 확대하지 않았다면, 열녀의 순행과 절개를 온전히 함을 오직 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나운 계집의 보잘 것 없는 일이 됨을 면치 못했을 따름이다. 任公의 功이 어찌 작다고 할 수 있겠는가. 또한 莫卜은 열녀의 아버지로되 딸의 뜻을 알지 못하였고 이웃 사람들이 많았으나 酒宴을 베푸는 뜻을 전혀 몰랐는데, 오직 契同만이 자취를 미루어 열녀의 마음을 알았을 뿐아니라 곁에 드러난 것을 보고 마음 속까지 보아서 그 밥을 먹지 않고 먼저 반드시 죽을 것임을 말했으니, 그의 지혜도 또한 가히 자랑할 만하다. 우씨의 절개를 마땅히 크게 기록하고 任公의 功도 아울러 쓰고 契同의 지혜도 또한 마땅히 붙여서 써야 할 것이다.<sup>47)</sup>

이와 같이 작자 신덕함은 우씨 열녀가 궁벽한 시골 마을에 천한 부인으로서 節孝智勇을 다 겸비했음은 드문 일로서 하늘에서 타고난 열녀라

---

45) 『禹烈女傳』 25~27쪽 참조.

46) 『禹烈女傳』 27쪽 참조.

47) 『禹烈女傳』 27~28쪽 참조.

고 크게 칭찬하였다. 아울러 任世章 院長의 功과 金玆同의 지혜를 높이 평가하였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禹烈女傳』을 통하여 17세기 후반 경상도 의성현에 살았던 禹烈女의 삶과 생활을 살펴보았다. 『禹烈女傳』자료에는 우열녀의 삶과 생각, 부친 禹莫卜과 홀아비 군인 李英發의 생각과 심리묘사 등이 너무나 생생하게 잘 나타나 있다.

『禹烈女傳』자료에 나타난 우열녀의 삶과 생활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자 申德涵(1656~1730)은 우열녀의 행실이 완비되었다고 크게 칭찬하였다. 우열녀의 절개, 효, 지혜, 용기는 대장부가 종신토록 힘쓸 지라도 능히 하기 힘든 것이며, 궁벽한 마을에 천한 신분으로 이 큰 일을 한 행동은 옛 열녀보다 뛰어났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리하여 우열녀의 행적이 묻혀 사라지지 않도록 우열녀의 모든 행실을 자세히 기록하였던 것이다.

둘째, 우열녀는 성장과정에서부터 남다른 자질이 있었다는 점이다. 즉 말과 용모에 있어서 조용하고 단정하며 고결하였다. 그리고 남들과 망령되어 交遊하지 않았으며 嬉笑를 잘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성품은 여러 열녀들에게서 드러나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우열녀는 효종 8년(1657) 慶尙道 義城縣 東村 店池洞이라는 궁벽한 시골마을에 목수의 딸로 태어났다. 비록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줄지

에 과부가 되었지만 친정으로 가 품팔이 생활을 하며 守節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부인이 改嫁를 권유하였으나 그녀는 “사람이 禽獸와 다른 것은 예의가 있기 때문이다. 부부는 한번 같이 하면 종신토록 고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죽어도 개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신분이 改嫁가 문제되지 않는 하층민임에도 불구하고 개가에 대한 우열녀의 저항과 수절 의지는 17세기 후반에 이미 양반층 여성의 烈的 윤리가 서민층 여성에게까지 보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조선 후기에는 양반 여성보다 양인이나 천민 신분의 여성들이 과부가 된 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가를 떠나 친정으로 갔다. 우열녀의 경우도 남편이 죽은 뒤 경제적인 어려움과 늙고 병환중인 친정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 시어머니를 뒷날 봉양할 것을 기약하고 친가로 돌아갔던 것이다.

다섯째, 숙종 9년(1683)에 도적이 집에 들어와 남편이 도적의 칼에 찔렸다. 우열녀는 맨몸으로 칼을 무릅쓰고 남편을 구하고자 하였으나 같이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 남편은 죽고 혼자 살아남아 주야로 號哭하며 굶어서 따라 죽고자 했으나 가족이 지키고 보호하여 죽지를 못했다. 17세기에 이르면 남편이 죽은 후 남편을 따라 죽는 殉節의 유형이 여러 열녀들에게서 볼 수 있는데, 우열녀 역시 殉節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우열녀는 어려운 생활환경 속에서도 老父와 繼母를 잘 봉양한 孝女였다. 뿐만 아니라 가정형편상 시어머니와 떨어져 지내면서도 인편이 있으면 반드시 안부를 물었고, 문안할 때는 반드시 음식을 보내드렸다. 또한 남편과 시아버지에 대한 제사도 정성껏 지낸 孝婦였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처음에는 양반 아무개가 정절을 빼앗고자 하였으며, 나중에는 홀아버리 군인 李英發이 오랫동안 짝사랑을 하며 청혼하였으나 열녀의 마음을 얻지 못하자 가족과 친족 그리고 이웃에게까지 협박을 하였다. 그리



하여 결국 우열녀는 청혼을 승낙하고 영발의 집으로 가 추상같은 꾸밈음과 이어서 영발이 차고 있던 칼로 자결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다. 우열녀의 경우 비록 자결함에 실패하였지만 죽음으로써 강하게 저항함으로써 그 烈行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17세기에는 열녀의 守節보다는 열녀의 殉節과 자결을 더 높이 평가하였음을 우열녀의 사례로서 엿볼 수 있다.

여덟째 우열녀에 대한 포상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이 주목된다. 비록 任世章 院長이 官家에 우열녀의 행적을 알리기는 했지만 지방감사가 중앙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포상이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朝鮮王朝實錄』에도 우열녀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고 다만 邑誌에만 보이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끝으로 앞으로는 烈女傳 자료가 더 많이 발굴되어 열녀 개인들의 삶이 생생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申德涵, 1694 『禹烈女傳』, 필사본  
『不忘記』, 필사본  
『역주 고려사』  
『顯宗實錄』, 『顯宗改修實錄』, 『肅宗實錄』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민족문화추진회  
『慶尙道邑誌』  
『輿地圖書』  
『義城縣誌』  
申元祿, 『梅堂集』(『退溪學資料叢書』 11, 1998,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편, 법인문화사)  
申達道, 『晚悟集』(『退溪學資料叢書』 25, 1998,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편, 법인문화사)  
任必大, 『剛窩集』  
金宗德, 『川沙集』  
『韓國人の 族譜』, 1977, 일신각
- 이혜순, 김경미, 2002 『한국의 열녀전』, 월인.  
이혜순 외, 2002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월인.  
정창권, 2004 『향량, 산유화로 지다』, 풀빛.  
전여강 지음, 이재정 옮김, 1999 『공자의 이름으로 죽은 여인들』, 예문서원.  
박주, 1990 『朝鮮時代の 旌表政策』, 일조각.  
\_\_\_\_, 2000 『朝鮮時代の 孝와 女性』, 국학자료원.  
정지영, 2002 「조선 후기 과부의 또 다른 선택」 『역사와 문화』 5.

- 유향 지음, 이숙인 옮김, 1996 『열녀전』, 예문서원.
- 이순구, 1994 『조선초기 종법의 수용과 여성지위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고문서학회, 1996 『조선시대 생활사』, 역사비평사.
- 한국고문서학회, 2000 『조선시대 생활사』 2, 역사비평사.
- 차장섭, 1997 『조선 후기 벌열연구』, 일조각.
- 장병인, 1997 『조선 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 마크 피터슨 지음, 김혜정 역, 2000 『유교사회의 창출』, 일조각.
- 마르티나 도이힐러 지음, 이훈상 옮김, 2003 『한국 사회의 유교적 변환』, 아카넷.
- 이배용, 2005 『한국역사 속의 여성들』, 어진이
- 권순형, 2006 『고려의 혼인제와 여성의 삶』, 혜안

## Abstract

A Study on the Life of Woo the chaste woman(禹烈女) who lived in Eusung Hyun(義城縣) of Kyungsang Do in the late 17th Century

- Based on the story of Woo written by Duck-ham Shin(申德涵)-

Park, Joo

This is a study on the life of woman Woo lived in Eusung Hyun(義城縣) of Kyungsang Do at 17th century. Major facts are based on the story written by Mr. Duck-ham Shin(申德涵). The story include a life story of the woman Woo described by her birth, growth, marriage, widowed procedure, threat of soldier Young-bal Lee(李永發) by force, seduction her to remarry by a neighbor woman. The story consists of the touched description such as her strong will of keeping her chastity, trial of suicide at the yard of Young-bal Lee's house and revival in details. Woman Woo supported her father and step mother in hard situations. Also she hold a memorial service for the repose of her husband and father-in-law with her sincerity.

Duck-ham Shin wanted to give lesson to next generations. Woo who was born poor in the lower class was admired by him for her chastity, filial duty, wisdom and courage, which a nobleman had to keep at that time. The author hope to find more stories of the chaste women to be introduced.

Key Words : Late 17th Century, Eusung Hyun of Kyungsang Do,  
Woo the chaste woman, 『the story of Woo』,  
Duck-ham Shin